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3861 압류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139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1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redacted]오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제1심에서는 공동원고 주식회사 A도 위와 같이 청구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3. 10. 21. 대표이사인 C이 석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6. 대표이사 D가 주식회사 [redacted]증권에서 사채,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 및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은 C이 2013. 12. 16. 대표이사를 F으로 하여 석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은 C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석유수출입업 신고 및 저장시설 계약

1) A는 2013. 11. 29. [redacted]관리원(이하 '[redacted]원'이라고 한다)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저장시설을 '[redacted]도 [redacted]에 있는[redacted] 에너지 소유의 15,000킬로리터'로 기재하였다.

2) E는 2013. 12. 20. [redacted]원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저장시설을 '[redacted] [redacted]군 [redacted]리 [redacted]에 있는 5,500킬로리터'로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등록신청을 위해 2013. 12. 19. [redacted]터미널 주식회사(이하 '[redacted]영'이라고 한다)와 [redacted] [redacted]군 [redacted]리[redacted]에 있는[redacted]영 소유의 옥외저장탱크 T-204(이하 'T-204 탱크'라고 한다)를 2013. 12. 19.부터 2014. 12. 18.까지 보증금 5,000만 원, 보관료 월 2,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체화물 취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와 A는 2013. 12. 13. [redacted]과, 계약기간을 2014. 12. 14.까지, 보증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7,000만 원, 보관료 월 2,150만 원, 출고지시권한은 원고가 갖는 것으로 하여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또는 [redacted]리 [redacted]에 있는 [redacted] 소유의 옥외 저장탱크 T-105(용량 11,000킬로리터, 69,182배럴)와 그 부속시설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체화물 취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와 E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1) A, E와 원고는 2013. 12. 13경 E와 A 사이의 경유 10피피엠 설퍼(GASOIL 10PPM SULPHU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원고의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제1조(목적) ① 갑(E)은 을(A)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② 갑, 을, 병(원고)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범위와 효력)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갑, 을, 병 사이에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2. 17.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주문) 을은 갑에게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써 물품을 주문한다. 제5조(물품) ① 갑은 을에게 구매한 물품을 을이 지정한 유류저장탱크 시설까지 직접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운송하는 방법으로 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물품의 품질이 석관원이 정하는 국내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② 물품 대금은 [redacted]원의 품질검사 합격공문을 수령한 당일 또는 익일 제3항에 따라 이체한다.

2) A와 E는 그 무렵 위 물품구매계약을 구체화하여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물품구매계약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E)가 구매자(A)에게 판매할 석유제품을 공급 인도하고, 구매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의 수량 및 품질)
① 본 계약의 제품은 정유사 또는 수입사가 공급하는 국내 자동차용 경유(10ppm ULSD) 제품으로 하며, 매월 15,000톤에서 20,000톤을 구매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최종 수량 및 가격은 인도시 물품 구매 주문서에 명시하여 최종 결정한다.
④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품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의 가격 및 대금의 지급)
③ 구매자는 제품 인도 시 잔금은 [redacted]원 합격증이 나온 당일 또는 익일 지급하며,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외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한 바에 따르고, 판매지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 최초 석관원 합격증을 기준으로 한다.
④ 물품 구매 주문은 주문서의 별도 협의된 내용인 구매 주문서로 한다(항차별 별첨).
제4조(제품인도)
제품의 인도지 및 인도방법 등 제품인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2. 17.부터 2014. 6. 16.까지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라. 동산근담보설정계약

A는 2013. 12. 16. [redacted]증권 주식회사,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A, [redacted]증권 주식회사를 동산담보권자 A, 원고를 동산담보권자 B, 채권최고액 37,700,000,000원으로 하여 [redacted]에너지 주식회사의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로 [redacted] 옥외저장탱크 TK-108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전부와 [redacted]의 T-105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전부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동산근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근담보설정등기도 마쳤다(위 등기에 의한 원고의 동산담보권을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경위

1) E는 2013. 12. 24.부터 2014. 3. 4.까지 3항차에 걸쳐 일본 G이 제조한 이 사건 물품 68,264,674리터를 상사 중개인인 [redacted]오일(이하 '[redacted]스'라고 한다)을 통해 울산항(25,548,200리터)과 평택항(42,716,474리터)으로 수입하였다.

2) E는 2014. 3. 2. 이 사건 물품 8,181.696톤을 수입하여 T-105 탱크에 입고하였는데, 위 탱크에 입고된 물품에 바이오디젤과 유동성 강하제가 주입되어 총 분량이 10,049,770리터가 되었고, 같은 날 평택항에 입고된 물품은 14,871,047리터였다. 그리고 E는 2014. 3. 2. 자신을 화주로 하여 위 탱크에 입고된 물품에 대하여 2014. 3. 6. 수입신고를 마쳤다.

3) 위 일자에 수입된 물품 8,181.696톤 중 약 4,447.635톤이 2013. 3. 5.경 T-105 탱크에서 T-204 탱크로 옮겨졌고, E가 [redacted]원에 위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redacted]원은 2014. 3. 12. 위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합격통지를 하였다. 이후 A는 E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아 소비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4) 위 수입된 물품 8,181.696톤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T-105 탱크에 남아있던 물품 3,734.061톤(4,489,670리터) 역시 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2014. 3. 13. T-204 탱크로 옮겼다. [redacted]원은 2014. 3. 17. 위와 같이 옮겨진 이 사건 가스오일의 시료를 채취하여 2014. 3. 28.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2014. 3. 31. 우편으로 E에게 품질적합의 결과통보를 하였으나, E 사무실의 폐문으로 반송처리 되었다.

5) A와 E는 2014. 3. 14. 위 1.마.2)항 기재 가스오일 10,049,770리터의 가격을 리터당 1,460원으로 정하여 지불 총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14,672,664,200원으로 하는 물품구매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A는 위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2014. 2. 17.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3,348,879,398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경위

1) E는 3항차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주행분, 이하 '주행세'라고 한다)를 한 차례도 신고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2014. 2. 28.까지 1,969,554,290원(가산세 및 가산금 미포함 금액)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redacted]시장이 납부고지한 주행세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4. 3. 17. E가 임차한 T-204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류(이하 '선행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redacted]시장도 2014. 3. 18. E가 납부하지 않은 주행세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선행 압류에 참가압류하였다.

3) 이후 [redacted]증권이 2014. 3. 27. 피고에게 수입 경유에 대한 원가계산식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선행 압류에 대한 해제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하는 과정에서 A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3항차분 미지급금 3,035,513,422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2014. 4. 28. A가 E에게 지급해야 할 3항차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에 압류하였으며, 이후 2014. 4. 29. 위 선행 압류는 해제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2014. 5. 7. A에게 위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음에도 A가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A가 피고의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14. 5. 12. 다시금 이 사건 [redacted]오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C과 F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C과 F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2015. 4. 10.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6, 323(병합)호로 "C이 F을 E의 대표이사로 하여 바지회사인 E를 설립한 후 E의 이름으로 경유의 수입 및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그 수입된 경유가 보세구역에 반출되면 그 즉시 E가 A에게 이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하되 E에게는 추후 주행세를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E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양도단가를 책정하여 A가 E로부터 경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C은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의 형을, F은 징역 2년 6월(다만 4년간 집행유예)에 벌금 67억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redacted]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1) A와 E는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가스오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2014. 3. 2. A가 지정한 유류저장탱크인 T-105 탱크에 이 사건 가스오일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으므로, A는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도 유효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E)가 아닌 제3자(A)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점유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점유자인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A와 E가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E가 A에게 이 사건 가스오일을 인도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류하였으므로, A는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은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담보권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담보권 행사에 법률상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담보권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부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담보권의 효력이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 한편, A가 이 사건 가스오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가스오일에 관한 이 사건 담보권의 성립 및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이므로, A가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우선적인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는 E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유효하고, A는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가스오일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 물품구매계약서 제2조는 향후 물품의 공급과 관련된 개별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계약서 제4조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조 제4항은 구체적인 물품 구매 주문은 항차별로 매수할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본계약은 2013. 12. 17.부터 향후 6개월간 이루어질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개별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하여 이후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은 주문서에 의한 개별 물품매매계약을 통하여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주문서인 이 사건 주문서는 2014. 3. 14.에서야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무렵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② 물품구매계약서 제5조에서는 물품의 공급(인도)에 관하여 주문서에 의한 주문을 규정한 제4조 직후에 이어서 규정하고 있고, 물품구매계약서 제5조 제2항,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석관원이 정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한 물품의 공급(인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문서에서 공급(인도)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와 E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주문서에 의한 개별 물품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redacted]원의 품질 검사를 거쳐서 해당 물품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인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문서가 2014. 3. 14.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redacted]원의 품질검사 합격통지가 2014. 3. 31.경 이루어진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가스오일은 E가 [redacted]으로부터 임차한 T-204 탱크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후 E가 A에게 이 사건 가스오일을 인도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면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점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E가 A에게 이 사건 가스오일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A는 이 사건 가스오일을 인도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③ 한편 앞서 본 사정들을 두루 고려해 보면, 비록 E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T-204 탱크에 입고하기 전에 A와 원고가 임차한 T-105 탱크에 일시 저장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T-204 탱크에 바이오 디젤 및 유동성 강하제 등이 있어 이 사건 가스오일과의 혼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거나 T-204 탱크의 용량 부족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로써 E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A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④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스오일이 2014. 3. 2. T-105 탱크에 입고됨으로써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가 A로 변경된 것이라면, A와 E는 T-105 탱크에 입고된 이후인 2014. 3. 6. 위 물건에 대한 화주를 A로 수입신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당일 E가 위 물건의 화주임을 밝히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또한 T-105 탱크를 이 사건 가스오일의 저장시설로 변경등록 하여 A가 직접 석유품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E가 석유품질검사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스오일이 2014. 3. 2. T-105 탱크에 일시 입고된 사정만으로 A가 E로부터 이 사건 가스오일을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더욱이, C과 F에 대한 형사 판결에 의하면, A와 E는 이 사건 가스오일이 통관되면 A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가스오일은 아직도 보세창고에 남아 있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A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권은 T-105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에 미치는 것인데, 이 사건 가스오일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T-105 탱크에서 T-204 탱크로 옮겨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권의 효력이 이 사건 가스오일에 추급한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임상민

판사 주은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목록

1. 압류재산 : GAS-OIL
2. 압류수량 : 4,489,670L
3. 소재지 : [redacted]광역시[redacted]군[redacted]읍[redacted] [redacted]길 [redacted]
   ([redacted]터미널내저장장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관계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끝.